

영등포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9.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7호로 2017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일부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괄 개정대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2개 조례

나. 주요 개정사항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된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개정
 - 정비내역

조례명	정비사항	비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안 제3조

조례명	정비사항	비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안 제5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안 제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 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안 제8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청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 제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안 제1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안 제1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지식경제부령→산업통상자원부령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지식경제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일부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9조 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으며,
-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각각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였으며,

-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였음.

○ 검토결과, 시의 적절하며, 기타 상위법령 및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정부조직법<2017.7.26 시행>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정부조직법<2010.3.19 시행>

제22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0.1.18.>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외교통상부
4. 통일부
5. 법무부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수산식품부
10. 지식경제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노동부
14. 여성가족부
15. 국토해양부

제33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안전행정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 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